

IP NEWSLETTER

2017 년 11 월 발행통권제 185 기

<부정경쟁방지법> 대조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차 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통과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77호에 의하여 공포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1993년 9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심사용 초고) (2016년 2월 25일) |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2017년 11월 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개정) |
|---|---|---|
| 제1장 총칙 | | |
|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양호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경쟁을 격려하고 보호하며,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고,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법을 제정한다. | | 제1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양호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경쟁을 격려하고 보호하며,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고,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고자 본 법을 제정한다. |
| 제2조 경영자는 시장거래 에서 반드시 자발적, 평등,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부정경쟁은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자의 합법권익을 손해하며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칭하는 경영자는 상품경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이하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및 개인 을 가리킨다. | 제2조 경영자는 경제활동 에서 반드시 자발적, 평등,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부정경쟁은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손해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칭하는 경영자는 상품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을 가리킨다. |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 활동 에서 반드시 자발적, 평등, 공정,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칭하는 부정경쟁 행위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손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칭하는 경영자는 상품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의 상품은 서비스를 포함)에 종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 을 가리킨다. |
| 개정초안 2차 심사고 제2조 제2항에서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항을 “본 법에서 칭하는 부정경쟁 행위는 생산경영 활동에서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 경쟁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손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 | |

| | | |
|---|--|--|
| <p>제3조 각 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경쟁을 위해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기타 부문에서 감독검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p> | <p>제3조 각 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경쟁을 위해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 부문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부문은 해당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p> | <p>제3조 각 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경쟁을 위해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p> <p>국무원에서는 부정경쟁 방지 협조체계를 형성하여,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중대한 정책을 연구 및 결정하며, 시장 경제 질서의 보호에 있어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조율하여 처리한다.</p> <p>제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부문에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하며 법률, 행정법규가 기타 부문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p> |
|---|--|--|

| | | |
|---|---|--|
| <p>제4조 국가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보호한다.</p> <p>국가기관 근무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된다.</p> | <p>제4조 국가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지지하며 보호한다.</p> <p>국가근무자는 부정경쟁 행위에 참여하거나 해당 행위를 지지 또는 비호해서는 안된다.</p> | <p>제5조 국가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모든 조직 및 개인의 사회적 감독을 지지하며 보호한다.</p> <p>국가기관 및 해당 기관 근무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된다.</p> <p>업계조직은 업계자율을 강화하여야 하며 회원이 법에 의거하여 경쟁하는것을 인도하고 규범하여야 하며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p> |
|---|---|--|

업계조직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방지 및 제재에 있어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일부 의견이 제출되었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개정초안 2차 심사고 제5조에 한개 항을 추가 즉 “업계조직은 업계자율을 강화하여야 하며 회원이 법에 따라 경쟁하는것을 인도하고 규범하여야 하며 시장 경쟁질서를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제2장 부정경쟁 행위

| | | |
|--|---|--|
| <p>제5조 경영자는 하기의 부정수단을 이용해 시장거래에 중사하고 경쟁자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p> <p>(1)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는것; (2) 유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상품과 혼동하도록 하여 구매</p> | <p>제5조 경영자는 상업표식을 이용하여 하기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타인의 유명한 상업표식 또는 타인의 유명한 상업표식과 유사한 상업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장을 교란하는것; (2) 자신의 상업표식을 부각시켜 사용하고 타인의 상업표식과</p> | <p>제6조 경영자는 하기의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는 교란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 (2)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칭 등 포함), 이름(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p> |
|--|---|--|

| | | |
|---|--|--|
| <p>자가 타인의 유명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것;</p> <p>(3)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것;</p> <p>(4) 상품에 위조 또는 사칭한 인증 표장, 유명/우수 표장 등 품질표장을 사용하고 원산지를 위조하여 상품 품질을 오해하도록 하는 하위표식을 사용하는것.</p> | <p>동일/유사 하도록 하여 대중의 혼동을 일으키고 시장을 교란하는것;</p> <p>(3)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 저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혼동을 일으키고 시장을 교란하는것;</p> <p>(4) 유명 기업 및 그룹 명칭 중의 상호 또는 약칭을 상표중의 문자 또는 도메인의 주체부분 등으로 사용하여 대중의 혼동을 일으키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것;</p> <p>본 법에서 칭하는 상업표식은 상품 생산자 또는 경영자를 구분하는 표장을 가리키며, 유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 상품형태, 상표, 기업 및 그룹의 명칭/약칭, 상호, 도메인 주체부분, 사이트 명칭, 웹페이지, 이름, 필명, 예명, 방송 프로그램 명칭, 표식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p> <p>본 법에서 칭하는 시장교란은 관련 대중이 생산자, 경영자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오인을 초래하는것을 가리킨다.</p> | <p>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p> <p>(3)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도메인 주체부분, 사이트 명칭, 웹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것;</p> <p>(4)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충분히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교란행위.</p> |
| <p>개정초안 2차 심사고 제6조에서는 경영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 등 상품의 출처를 교란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을 내렸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은, 타인의 상업표식을 위조하는것은 상품출처를 교란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며, 통상 위조를 당한 표식이 관련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을 가지고 관련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명확하기를 건의하였다. 또한 일부 위원은 제6조 제1항에서는 상품표식에 대하여 오직 명칭, 포장, 장식만 나열하였지만 이는 전면적이지 않으며 “모양”, “디자인” 등 표식도 추가하는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를 건의하였다. 첫째, 관련 표식 앞에 “일정한 영향이 있는”라는 한정을 추가; 둘째, 제1항의 “명칭, 포장, 장식”을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으로 개정하여 실천에서의 기타 상업표식도 포함시켰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p> <p>개정초안 3차 심사고 제6조에서는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상업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교란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금지규정을 내렸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타인의 번역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교란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또 일부는 실천중에는 기타 형식의 교란행위도 존재하므로 부칙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제6조 제2항에 나열한 표식중에 “번역명”을 추가함</p> | | |

과 동시에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이들의 특정 연관성에 대해 충분히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교란행위.”를 제4항으로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 | | |
|--|---|---|
| <p>제8조</p> <p>경영자는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해서는 안된다. 상대방 업체 또는 개인한테 장부외의 커미션을 지불하는 경우 뇌물공여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상대방 업체 또는 개인이 장부외의 커미션을 수취하는 경우 뇌물수수로 간주하여 처리한다.</p> <p>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 시, 명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 할인을 제공하거나 중개자에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방에 할인을 제공하거나 중개자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p> <p>할인,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영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p> | <p>제7조</p> <p>경영자는 하기 상업적 뇌물공여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또는 공공서비스에 의거하여 자신의 업체, 부문 또는 개인의 경제이익을 도모하는것;</p> <p>(2) 경영자가 계약 및 회계 증빙 자료에 교부한 경제이익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것;</p> <p>(3)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경제이익을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할 것을 승낙하여,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손해하는것.</p> <p>상업적 뇌물공여는 경영자가 거래 상대 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경제이익을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경영자를 위해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세를 도모하도록 하는것을 가리킨다. 경제이익을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할 것을 승낙하는것은 상업적 뇌물공여이며, 경제이익을 수취하거나 수취할 것을 동의하는것은 상업적 뇌물수수이다.</p> <p>직원이 상업적 뇌물공여를 이용하여 경영자를 위해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세를 도모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직원이 경영자의 이익을 위반하고 뇌물을 수수한것임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p> | <p>제7조</p> <p>경영자는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하기 업체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세를 도모하여서는 안된다.</p> <p>(1) 거래 상대방 업체의 근무자;</p> <p>(2) 거래 상대방 업체의 위탁에 의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p> <p>(3)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업체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것.</p> <p>경영자는 거래활동에서 명시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에게 할인을 지불하거나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경영자는 거래상대에게 지불한 할인 및 중개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할인, 수수료를 제공받은 경영자도 반드시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p> <p>경영자의 근무자가 뇌물을 공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영자의 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근무자의 행위와 경영자가 도모하는 거래기회와 경쟁우세와는 관련이 없다는것을 경영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개정초안 2차 심사고 제7조 제1항은 형법의 관련 규정과 맞물리며 상업적 뇌물공여 대상에 대하여 범위를 확정하였으며, 그 중 제3항은 “국가기관, 국유회사와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 또는 국가근무자”이고, 제4항은 “국가근무자의 직권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업체 또는 개인”이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은 시장주체가 시장경쟁에서 평등한 지위에 처해있는데 **상업적 뇌물공여 대상에서 국유업체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하였

다. 또 일부는 실제로 이 두 주체는 모두 자신의 직권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주는것에 해당하기에 **합병하는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두 조항에 대하여 합병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으로 수정한다는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 | | |
|---|--|--|
| <p>제9조 경영자는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제작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한, 원산지 등에 대해 사람들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홍보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광고의 경영자는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라, 디자인, 제작, 발표 해서는 안된다.</p> | <p>제8조 경영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하기 상업적 홍보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1) 허위홍보 또는 편파적 홍보를 하는것; (2) 과학적으로 정론되지 않은 관점, 현상을 정론된 사실로 하여 홍보하는것; (3)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는것.</p> | <p>제8조 경영자는 상품의 성능, 품질, 기능, 판매상황, 사용자 평가, 영예 획득 이력 등에 대하여 허위홍보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를 도와 허위홍보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해서는 안된다.</p> |
|---|--|--|

개정초안 2차 심사고 제8조에서는 경영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홍보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허위홍보를 하는 문제가 비교적 엄중하며 심지어 전문적으로 허위거래를 조직하여 타인을 도와 허위홍보를 진행하여 부정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고 있기에 상기 경우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충하고 완선하기를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조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첫째, 허위홍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세분화하고, 경영자는 자신의 상품의 “판매상황”, “사용자 평가” 등에 대하여 허위홍보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것을 명확히 하다. 둘째,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를 도와 허위홍보 또는 사람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을 추가한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 | | |
|---|---|--|
| <p>제10조 경영자는 하기의 수단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1) 절도, 회유,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것; (2) 상기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것; (3)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영업비밀 유지에 관련한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것.</p> | <p>제9조 경영자는 하기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1) 절도, 회유, 협박,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것; (2) 상기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것; (3)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영업비밀 유지에 관련한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p> | <p>제9조 경영자는 하기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1) 절도, 뇌물공여,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하는것; (2) 상기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것; (3)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영업비밀 유지에 관련한 권리자의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장악한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것.</p> |
|---|---|--|

| | | |
|---|--|--|
| <p>제3자가 상기 나열된 불법행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 또는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p> <p>본 조항에서 칭하는 영업비밀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경영자가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가리킨다.</p> | <p>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p> <p>제3자가 상기 나열된 불법행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p> <p>본 법에서 칭하는 영업비밀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구비하며 경영자가 상응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가리킨다.</p> | <p>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직원 또는 기타 업체, 개인이 상기 나열된 불법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여전히 해당 영업비밀을 획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p> <p>본 법에서 칭하는 영업비밀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구비하며 권리가 상응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가리킨다.</p> |
|---|--|--|

개정초안 제9조, 제10조는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이다. 그 중 제10조는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또는 전직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하였고, 국가기관 근무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부문, 업체는 본 법에서 규정한 주체는 경영자이고,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직원은 경영자에 속하지 않으며, 이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권리는 기타 법적경로를 통하여 구제를 취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 또 일부는 관련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 근무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기에, 본 법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제기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개정초안 제10조의 상기 규정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동시에 실천중에서의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직원이 불법수단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획득한 후, 일부 경영자는 상기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여전히 해당 영업비밀을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제3자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직원 또는 기타 업체, 개인이 불법수단을 통하여 획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여전히 해당 영업비밀을 획득,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한다.”라고 더욱 명확히 하기를 건의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개정상황 보고)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은,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시 접촉하는 경영자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가져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한개의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감독검사부문 및 해당 부문 근무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동시에, 감독검사부문 근무자가 상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의 법적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새로 추가된 조항은 신규 법률 제15조이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개정초안 3차 심사조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경영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수단에 대하여 나열하였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나열한 수단에 “사기”를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해당 의견을 수락할 것을 건의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 | | |
|---|--|---|
| <p>제13조</p> <p>경영자는 하기의 경품판매에 중사해서는 안된다.</p> <p>(1) 경품이 있다고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내정인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기만방식으로 경품판매를 진행하는</p> | <p>제10조</p> <p>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해 하기의 경품판촉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설정된 경품의 종류, 당첨수령 조건, 경품금액 또는 경품 등</p> | <p>제10조</p> <p>경영자는 경품판매를 진행할 시 하기 경우가 존재해서는 안된다.</p> <p>(1) 설정된 경품의 종류, 당첨수령 조건, 경품금액 또는 경품판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당첨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p> |
|---|--|---|

| | | |
|---|---|--|
| <p>것;</p> <p>(2) 경품판매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품질의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것;</p> <p>(3) 추첨식 경품판매의 최고 경품 금액이 5천위안을 초과하는 경우.</p> | <p>경품판촉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당첨수령에 영향을 미치는것;</p> <p>(2) 경품이 있다고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내정인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기만방식으로 경품판매를 진행하는것;</p> <p>(3) 당첨수령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하는것;</p> <p>(4) 추첨식 경품판촉의 최고 경품 금액이 2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p> <p>본 법에서 칭하는 경품판촉은 추첨식 경품판촉과 증정식 경품판촉을 포함한다. 동등한 조건하에 확정된 경품을 제공하는것은 증정식 경품판촉이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경품 종류 또는 당첨 여부를 확정하는것은 추첨식 경품판촉이다.</p> | <p>(2) 경품이 있다고 속이거나 고의적으로 내정인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기만방식으로 경품판매를 진행하는것;</p> <p>(3) 추첨식 경품판매의 최고 경품 금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p> |
| <p>제14조</p> <p>경영자는 허위사실을 날조, 확산하여 경쟁자의 상업이미지 및 상품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p> | <p>제11조</p> <p>경영자는 허위정보, 악성평가를 날조, 확산하고 불충분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정보를 확산하여 타인의 상업이미지 또는 상품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p> | <p>제11조</p> <p>경영자는 허위정보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정보를 날조, 전파하여 경쟁자의 상업이미지 또는 상품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p> |
| | <p>제13조</p> <p>경영자는 인터넷기술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기타 경영자의 정상영업을 교란하는 하기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사용자의 동의없이 기술수단을 통해 사용자가 기타 경영자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것을 저해하는것;</p> <p>(2) 허가 또는 수권없이 기타 경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로 이동하도록 하는</p> | <p>제12조</p> <p>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시 반드시 본 법의 각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p> <p>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하기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기타 경영자의 동의없이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중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로 이동하도록 하는것;</p> <p>(2)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p> |

| | | |
|--|---|---|
| | <p>것;</p> <p>(3)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수정, 차단, 삭제 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에게 잘 못 안내하거나 기만, 강요하는것;</p> <p>(4) 허가 또는 수권 없이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것.</p> | <p>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차단, 삭제 하도록 사용자에게 잘 못 안내하거나 기만, 강요하는것;</p> <p>(3) 악의적으로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것;</p> <p>(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p> |
|--|---|---|

개정초안 제14조에서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 영역에서 종사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나열하였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지방, 부문, 기업에서는 인터넷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변화가 빨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기에, 요약한 규정과 부칙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인터넷 영역의 부정경쟁 행위의 일부는 전통 부정경쟁 행위가 인터넷 영역에서의 확장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제하여야 하며, 일부는 인터넷 영역의 특유의 또는 기술 수단을 이용한 부정경쟁 행위에 속하며 이에 대하여서는 요약과 나열의 방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으며 부칙을 추가하는 것을 통하여 실천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개정초안의 상기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저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경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시 반드시 본 법의 각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것을 명확히 하다. 둘째, 인터넷 영역의 특유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내린다. 즉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셋째, 부칙을 추가한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개정상황 보고)

| | | |
|---|--|--|
| <p>제6조</p> <p>공공기업체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독점지위를 구비한 경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하여 기타 경영자와의 공중경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p> | <p>제6조</p> <p>경영자는 상대적 우세를 이용하여 하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p> <p>(1) 정당 이유없이 거래상대방 측의 거래대상을 한정하는것;</p> <p>(2) 정당 이유없이 거래상대방 측에게 지정상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하는것;</p> <p>(3) 정당 이유없이 거래상대방 측의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조건을 한정하는것;</p> <p>(4) 비용을 마음대로 수취하거나 불합리하게 거래상대방 측에 기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것;</p> <p>(5)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하는것;</p> | |
|---|--|--|

| | | |
|---|--|--|
| | <p>본 법에서 칭하는 상대적 우세는 구체적인 거래과정에서 한 측의 거래자가 자금, 기술, 시장진입, 판매루트, 원자재 구입 등 방면에서 우세지위에 처해있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경영자에 대해 의존하고 있어 기타 경영자로 바꾸어 거래하기 어려운것을 가리킨다.</p> | |
| <p>제7조 정부 및 그 소속부문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정부 및 그 소속부문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지상품이 본지방 시장에 진입하는것을 제한하거나 본지방 상품이 외지시장으로 판매되는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p> | | |
| <p>제11조 경영자는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손절판매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1) 신선한 상품 판매; (2)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또는 기타 오래 묵은 상품을 판매하는것; (3) 시즌 할안; (4) 채무, 품목 전환, 휴업으로 인해 상품을 세일하여 판매하는것.</p> | | |
| <p>제12조 경영자는 상품 판매시 구매자의 의사를 위반하고 상품을 끼워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p> | | |
| <p>개정초안 제11조에서는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할 시 구매자의 의사를 위반하고 상품을 끼워팔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지방, 부문, 기업, 단위는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에 대한 규범은 경영자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는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독금법은 이미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렸기에 본 법에서는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구비하지 않</p> | | |

은 경영자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치하는것을 허락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타 경영자를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활동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개정상황 보고)

| | | |
|---|---|--|
| <p>제15조 입찰자는 서로 내통하여 입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는 안된다. 입찰자와 입찰공고자는 서로 결탁하여 경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p> | <p>제12조 입찰자는 서로 내통하여 입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서는 안된다. 입찰자와 입찰공고자는 서로 결탁하여 경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p> | |
| | <p>제14조 경영자는 타인의 합법권익을 손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타 부정경쟁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중의 기타 부정경쟁 행위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 인정한다.</p> | |

개정초안 제15조에서는 경영자가 본 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하였고 본 법 제2장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경쟁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확실히 조사처리가 필요한 시장 거래행위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 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서가 함께 연구하여 부정경쟁 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상무위원회 구성원과 지방, 부문, 단위, 업체에서는 부정경쟁 행위는 **민사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하기에 행정기관에 수권하여 본 법에서 명확하게 나열하지 않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게 하는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개정상황 보고)

| 제3장 감독검사 | | 제3장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 |
|--|---|--|
| <p>제16조 현금 이상의 감독검사부문은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p> | | |
| <p>제17조 감독검사부문은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함에 있어서 하기의 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1)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검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증명인에 질문하고 증명서류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2)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한 협의,</p> | <p>제15조 감독검사부문은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하기의 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1) 피조사 행위에 관련한 영업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2)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업체, 개인에 질문하고, 증명서류, 데이터와 기술지</p> | <p>제 13조 감독검사부문은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함에 있어서 하기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진입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2)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업체, 개인에 질문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거나 피조사 행위와 관련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p> |

| | | |
|--|---|--|
| <p>장부, 영수증, 서류, 기록, 업무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한다;</p> <p>(3) 본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한 재물을 검사하며, 필요시 피검사 경영자에 해당 상품의 출처, 수량을 설명하도록 명령하고, 판매를 중단시키며 검사를 대가하도록 하고, 해당 재물을 이전, 은닉, 소각하지 못하도록 한다.</p> | <p>원 또는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한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p> <p>(3) 피조사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한 협의, 장부, 영수증, 서류, 기록, 업무서신, 전자데이터, 시청각자료 및 기타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한다;</p> <p>(4) 피조사 경영자에게 불법협약이 있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피조사 행위에 관련한 재물의 출처와 수량을 설명하도록 하며, 해당 재물을 이전, 은닉, 소각하지 못하도록 한다;</p> <p>(5)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가 있는 재물을 차압 및 봉인하고 압류한다;</p> <p>(6)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은행계좌 및 입금과 관련된 회계 증빙서류, 장부, 입출금 내역 등을 조회한다;</p> <p>(7) 불법자금을 이전 또는 은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를 동결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p> | <p>(3)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와 관련한 협의, 장부, 영수증, 서류, 기록, 업무서신 및 기타 자료를 조회하고 복제한다;</p> <p>(4)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와 관련한 재물을 차압 및 봉인하고 압류한다;</p> <p>(5)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영자의 은행계좌를 조회한다.</p> <p>상기 규정한 조치를 취할 시, 반드시 감독검사부문의 주무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기 조항 제4항, 제5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할 시, 지급시 이상의 인민정부 감독검사부문 주무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감독검사 부문이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처리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p> |
|--|---|--|

개정초안 제16조는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할 시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나열하였다. 일부 지방, 부문, 기업은 관련 조치의 **절차적인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일부는 재물에 대하여 차압 및 봉인, 압류, 은행계좌 조회 등 조치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해당 조치의 **실시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한정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이 조항에 “관련 조치를 취할 시, 반드시 감독검사부문의 주무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물에 대하여 차압 및 봉인, 압류, 은행계좌 조회 조치를 취할 시, 구(区)를 설치한 시(市)급 이상의 인민정부 감독검사부문 주무에게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개정상황 보고)

| | | |
|---|---|---|
| <p>제18조 감독검사부문의 근무자는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시 반드시 검사 관련 신분증명을 출사해야 한다.</p> | | |
| <p>제19조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시, 피검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증명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p> | <p>제16조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시,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업체,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을 제공하여 감독검사부문이</p> | <p>제14조 감독검사부문이 부정경쟁 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시,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업체,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p> |

| | | |
|--|---|---|
| |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저해해서는 안된다. | |
| | | 제15조 감독검사부문 및 해당 부문 근무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다. |
| | | 제16조 부정경쟁 행위의 혐위에 대하여 임의의 업체 및 개인은 감독검사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부문은 신고를 접수한 후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신고접수 전화번호, 사서함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 및 증거를 제공한것에 대하여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조사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장 법적책임

| | | |
|---|---|---|
| 제20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피침해 경영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침해 경영자의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권기간 침권으로 인해 획득한 이익으로 확정하며, 피침해 경영자가 해당 경영자가 자신의 합법권익을 침해한 행위를 조사하는데 소요된 합리한 비용지출도 부담해야 한다. 피침해 경영자의 합법권익이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7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합법권익을 침해한 경우, 반드시 침권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또는 소비자 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를 받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7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의 합법권익이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영자가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실제손실로 확정하며, 실제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권으로 인해 획득한 이익으로 확정한다. 또한 배상액에는 경영자가 침해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소요된 합리한 비용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본 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손실과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경위에 따라 권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한다. |
|---|---|---|

개정초안 제20조에서는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일부 지방, 기업, 업체는 **민사배상액** 산정방법 규정에 관한 현행법을 회복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일부 부정경쟁 안건에서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경영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 배상액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민사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회복할 것을 건의하였다. 즉, 경영자가 부정경쟁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은 실제손실로 확정하며, 실제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자가 침권으로 인해 획득한 이익으로 확정한다. 또한 배상액에는 경영자가 침해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상표법 및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혼동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법정 배상액에 관련 규정을 추가한다. 즉, 침해행위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실제손실과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침해행위의 경위에 따라 권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한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개정상황 보고)

제21조
 경영자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기업명칭 또는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인증표장, 유명/우수표장 등 품질표식을 위조하거나 사칭하며, 원산지를 위조하여 사람들이 상품품질을 오해하도록 허위표식을 사용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상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유명상품 특유의 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유명상품과 서로 혼동하도록 하고 구매자가 타인의 유명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 검사감독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건의 경위에 따라 불법소득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경위가 엄중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위조품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본 법 제5조에 나열한 행위에 속하여 분쟁을 일으킨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감독검사부문이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경영자가 본 법 제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상품을 몰수하며, 불법영업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불법영업액이 없거나 불법영업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영업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경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업명칭 변경수속을 진행하도록 명령하며,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함과 동시에 기업등록 소재지의 감독검사부문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제18조
 경영자는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할 경우, 감독검사부문에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상품을 몰수한다. 불법영업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영업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영업액이 없거나 불법영업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다.
 경영자가 등록한 기업명칭이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적시에 명칭변경 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명칭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의 기업등록기관에서 통합신용코드로 해당 명칭을 대체한다.

| | | |
|--|---|--|
| | <p>의 명칭을 기업명칭을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으로부터 삭제하고 등록번호 또는 통합신용코드로 해당 기업의 명칭을 대체하며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기록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말소할 수 있다</p> | |
|--|---|--|

개정초안 2차 심사고 제18조 제2항에서는 경영자가 등록한 **기업명칭**이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며 실천중에서 점차 완선되고 있는 일부 개혁실험이 관련 되어져 있기에 원칙적 요구만 작성하고 구체적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였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해당 조항을 “경영자가 등록한 기업명칭이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적시에 명칭변경 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명칭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의 기업등록기관에서 통합신용코드로 해당 명칭을 대체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 | | |
|--|--|--|
| <p>제23조 공공기업체 또는 법에 의해 독점자위를 구비한 기타 경영자가 타인에게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만 구매하도록 제한하여 기타 경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하는 경우, 성급 또는 지급서의 감독검사부문을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경위에 따라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된 경영자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품질이 낮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마음대로 수취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을 반드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위에 따라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 <p>제19조 경영자가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급사 이상의 감독검사부문이 개정명령을 내리며, 불법영업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영업액이 없거나 불법영업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위에 따라 1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된 상품의 경영자가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기 규정을 참조하여 처벌을 내린다.</p> | |
|--|--|--|

| | | |
|---|--|--|
| <p>제22조 경영자가 재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뇌물을 공여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감독검사부문을 경위에 따라 1만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몰수한다.</p> | <p>제20조 경영자가 본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을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불법영업액의 10%이상 30%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p>제19조 경영자가 본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에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위안 이상 3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다.</p> |
|---|--|--|

| | | |
|--|---|--|
| <p>제24조</p> <p>경영자가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홍보를 진행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영향을 소거하도록 하며, 경위에 따라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광고의 경영자가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허위광고를 대리, 디자인, 제작, 발표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한다.</p> | <p>제21조</p> <p>경영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영업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영업액이 없거나 불법영업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p>제20조</p> <p>경영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홍보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 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 방식을 통하여 기타 경영자를 도와 허위홍보 또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업홍보를 진행할 경우, 감독검사부문이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할 수 있다.</p> <p>경영자가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위광고 발표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p> |
| <p>제25조</p> <p>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 <p>제22조</p> <p>경영자가 본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p>영업비밀 관리자가 타인이 사용한 정보와 자신의 영업비밀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고, 또한 타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은 자신이 사용한 정보의 합법출처에 대해 반드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p> | <p>제21조</p> <p>경영자는 본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감독검사부문이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 <p>제26조</p> <p>경영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품판매를 진행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p> | <p>제23조</p> <p>경영자가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상품을 몰수하며, 경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p>제22조</p> <p>경영자가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품판매를 진행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5만원 이상 50만원</p> |

| | | |
|---|--|---|
| <p>금을 부과할 수 있다.</p> | | <p>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 | <p>제24조 경영자가 본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소거하도록 명령하며, 경위에 따라 10만원 안 이상 300만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p>제 23조 경영자가 본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쟁자의 상업이미지, 상품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감독검사부문이 불법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소거하도록 명령하고, 10만원 안 이상 50만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 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 <p>제27조 입찰자가 서로 내통하여 입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고, 입찰자와 입찰 공고자가 서로 결탁하여 경쟁자의 공정경쟁을 배제하는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하다. 감독검사부문은 경위에 따라 1만원 이상 20만 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 <p>제25조 경영자가 본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300만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
| | <p>제26조 경영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10만원 이상 300만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p>제24조 경영자가 본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50만원 이상 300만 원 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p>제25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경쟁에 종사하고 불법행위의 위해결과를 주동적으로 소거하거나 감소하는 등 법정상황이 있는 경우, 법</p> |

| | | |
|------|---|--|
| | | <p>에 의거하여 가볍게 처벌하거나 행정처벌을 감소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바로잡아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p> <p>제26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경쟁에 종사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감독검사부문에서 신용기록을 기입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p> <p>제27조 경영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민사책임,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재산이 이를 지불하기에 부족할 시 민사책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p> |
| | <p>제27조 경영자가 본 법 제 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경쟁 행위를 진행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경위에 따라 10만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
| | <p>제28조 본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여전히 이에 대하여 생산, 판매, 저장, 운송, 인터넷 서비스, 기술지원, 광고홍보, 지불결제 등 편이조건을 제공한 경우, 경위에 따라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동적으로 감독검사부문의 조사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설명하며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감소할 수 있다.</p> | |
| 제28조 | 제29조 | |

| | | |
|--|---|---|
| <p>경영자가 판매증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부정경쟁 행위에 관련된 재물을 이전, 은닉, 소각하는 경우, 감독관리부문은 경위에 따라 판매, 이전, 은닉, 소각된 재물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 <p>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차압 및 봉인되거나 압류, 판매증지된 상품을 이전, 은닉, 소각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사건 관련 상품을 몰수하고 사건 관련 상품 가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
| | <p>제30조 감독검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 조사에 있어서, 법정사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자료, 상황을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상황을 제공, 또는 증거를 은닉, 소각, 이전하거나 기타 조사를 거부,저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이러한 행위를 정정하도록 명령하고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p> | <p>제28조 감독검사부문이 본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것을 방해하고 조사를 거절,방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문이 정정하도록 명령하고, 개인에 대하여서는 5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업체에 대하여서는 5만원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함께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 처벌을 내릴 수 있다.</p> |
| <p>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부문의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벌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주요관리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의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p> | <p>제31조 감독검사부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 <p>제29조 당사자가 감독검사부문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

| | | |
|---|---|---|
| <p>제30조 정부 및 그 소속부문에 본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지정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기타 경영자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제한하거나, 상품의 지역 사이의 정상적인 유통을 제한하는 경우, 상급기관이 이를 정정하도록 명령하고, 경위가 엄중한 경우 동급 또는 상급기관이 직접책임자에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정된 경영자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품질이 낮고 가격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비용을 마음대로 수취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반드시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경위에 따라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p> | | |
| <p>제31조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p> <p>제32조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국가기관 근무자가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자가 본 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해당 경영자를 비호하여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p>제32조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국가근무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을 소홀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p>제33조 부정경쟁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국가근무자가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자가 본 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해당 경영자를 비호하여 소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p>제30조 감독검사부문의 근무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며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p> |
| | | <p>제31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p> |
| 제5장 부칙 | | |
| | 제34조 | |

| | | |
|-----------------------------------|---------------------------------------|----------------------------------|
| | 본 법에서 규정한 “이상”, “이하”는 모두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 | |
| 제33조 본 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제35조 본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된다. | 제32조 본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